



2013년도 예산편성 점검기준

서울특별시

2013년도 예산편성 점검기준

-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및 2012~2016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기준 포함 -



서울특별시

5 위원회 참석수당

① 경비성격 : 법령·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회의시 참석자에 대한 수당

② 기준액

구분	단위	단가	비고
위원회 참석비	일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료 : 100,000원 초과 : 50,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무원인 경우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사무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자치단체에서 설치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의원인 경우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위원회에 지방의회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초과는 2시간 이상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사이버위원회 참석비	일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료 : 50,000원 초과 : 20,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무원과 의원은 위 내용과 동일 초과는 2시간 이상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단순히 E-mail 등을 통하여 심사할 경우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심사수당만 지급

※ 심사수당

- 법령·조례, 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 지급
예) 지방세 이의신청심의, 투·융자심사수당 등
- 법령·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이 단순한 회의참석 이외에 사전 자료수집·회의안건 검토 등을 하는 경우 계상된 예산액의 범위내에서 지급 가능함. 다만, 공무원인 경우 자기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변리사 등 관련 전문가로부터 자치단체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자문을 받는 경우 거래실례가격 등을 기준으로 자문료 지급 가능

6 목근매식비

① 경비성격

- 정규근무시간 개시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 종료후 근무하는 자 단,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 중에서 교대근무자, 야간근무수당 지급대상자, 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자는 제외
- 을지연습 등 비상훈련 참가자중 급식을 요하는 자

② 기준액

- 매식단가 : 1인 1식당 7,000원
- 소방공무원 화재진압출동 간식비 : 1인 3,000원(훈련출동은 미지급)

7 외국어 전문번역(감수)료

구분		한글→외국어	외국어→한글	비고
일반언어	번역	52,479원	좌측의 50%	영어, 일어 중국어 간체·번체
	감수	일반번역의 40%	좌측의 50%	
특수,가공, 기타언어	번역	일반번역의 140%	좌측의 50%	
	감수	특수번역의 40%	좌측의 50%	

- 적용기간 : 2012. 3. 8 ~ 2013. 2. 28
- 계약내용(단가계약) : A4 1면당 12point 800자 기준 52,479원 (부가세 포함)